

# 이안 퍼스티엄 이천부발 단지 내 상가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 주택과-25614호(2024. 8. 19.)로 입주자모집신고

▣ 공급위치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대동로 85

▣ 공급규모 : 상가 지하1층 1개동 총 10개 점포 (노면을 기준으로 실사용 상 지상에 해당)

▣ 입점일 : 잔금 납부 이후 즉시 입점 가능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납부일정

(단위: m<sup>2</sup>/원)

구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대지지분	분양내정가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지하 1 층	101호	49.5865	30.8875	80.4740	28.6527	80,700,000	379,400,000	37,940,000	498,040,000	49,804,000	448,236,000
	102호	44.4558	27.6916	72.1474	25.6880	72,400,000	340,600,000	34,060,000	447,060,000	44,706,000	402,354,000
	103호	119.2714	74.2943	193.5657	68.9188	142,700,000	670,700,000	67,070,000	880,470,000	88,047,000	792,423,000
	104호	48.9857	30.5132	79.4989	28.3055	73,900,000	347,400,000	34,740,000	456,040,000	45,604,000	410,436,000
	105호	44.3916	27.6516	72.0432	25.6509	67,100,000	315,400,000	31,540,000	414,040,000	41,404,000	372,636,000
	106호	85.3403	53.1586	138.4989	49.3124	128,800,000	605,700,000	60,570,000	795,070,000	79,507,000	715,563,000
	107호	92.0593	57.4427	149.4031	53.1948	139,000,000	653,700,000	65,370,000	858,070,000	85,807,000	772,263,000
	108호	48.5114	30.2178	78.7292	28.0314	67,500,000	317,700,000	31,770,000	416,970,000	41,697,000	375,273,000
	109호	78.2953	48.7703	127.0656	45.2415	109,200,000	513,600,000	51,360,000	674,160,000	67,416,000	606,744,000
	110호	38.2576	23.8307	62.0883	22.1065	48,900,000	230,100,000	23,010,000	302,010,000	30,201,000	271,809,000

※ 당 상가는 노면을 기준으로 실사용 상 지상에 해당하나 공급계약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 등 공부상에는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표기되므로 지하 1층으로 표기됨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 상기 단지 내 상가의 호실별 대지지분은 총 대지지분을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면적은 관련법규에 따라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및 실제 시공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등기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분양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이며, 각 실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가격입니다.
- ※ 상가 호수별 면적 대비 실사용 면적률은 벽체 단열, 외부 마감재의 시공여부 등의 사유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분양 내정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잔금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당사는 금융기관 대출 등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 잔금에 대한 별도의 선납할인은 없습니다.
- ※ 계약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점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경과 후에는 계약 해제합니다. 단, 쌍방간 협의하여 일정기간 연장 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연체요율에 의한 소정의 연체료와 관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입점여부와 상관없이 잔금납부일 이후의 상가관리는 계약자의 책임 및 비용이 부담됩니다.

## II 공급일정 및 공급방법

### ■ 시설용도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해당 허가(신고)관청에서 항목별 이용 가능용도 및 허가면적, 등록, 인가조건등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 계약자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지역제한 없음 ※ 청약통장 및 세대주와 무관함

### ■ 공급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

### ■ 계약체결일 및 구비서류

▶아래의 각 서류는 계약 점포 당 1부씩 제출

구분	계약체결일시 및 장소	구 비 서 류	
		개인	법인
계약	<p><b>2024. 09. 04 (수)</b>  <b>10:00~17:00</b>            단, 12:00~13:00제외,            17:00업무마감,            법정공휴일 제외</p> <p>이안 퍼스티엄 상가 사무실 108호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대동로85)</p>	<p>▷ 계약자 신분증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p> <p>▷ 인감도장</p> <p>▷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 계약용)</p> <p>▷ 주민등록등본 1부</p> <p>▷ 계약금 (입금 후 무통장입금증 지참)</p> <p>※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제출 서류</p>	<p>▷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p> <p>▷ 법인 인감증명서 1부</p> <p>▷ 법인 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p> <p>▷ 대표자 신분증 사본</p> <p>▷ 법인명이 통장 사본</p>

-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위임용) 1부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일 기준 2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이안 퍼스티엄 시행사 사무실(상가 108호) 도착기준이며, 10시 이전 도착자 2인 이상 및 기타사유로 도착순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추첨.
- 2024년 09월 04일 (수) 오전 10시부터 계약체결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계약보증금(분양내정가의 10%)을 당사 계좌로 입금한 자를 선착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수의계약 공급 개시시점, 신청장소 (이안 퍼스티엄 이천부발 분양사무실)에 동시 입장하는 경우 현장 추첨에 따라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현장 추첨결과에 따른 당첨자가 즉시 계약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당첨은 무효가 됩니다.
- 계약보증금 입금자와 계약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계약보증금 입금시간은 당사의 시스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수의계약은 당사의 사정에 의해 중단 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중단 시 이안 퍼스티엄 홈페이지(<http://iaanic.com/>)에 게시됩니다.
- 문의처 : 이안퍼스티엄 사무실 ☎ 1811-8176 (평일 10:00~17:00, 단, 12:00~13:00 제외)

#### ▣ 계약금, 잔금 납부 계좌 안내

은행명	입금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604-418608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 시, 입금호실과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상가 101호 → 상가101홍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 계약보증금 납부/반환/귀속

※ 현장에서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예금주를 확인하신 후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하며 반드시 계약자명의로 입금해야 합니다.
- 입금 시 입금호실과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상가 101호 → 상가101홍길동)
- 지정계좌 이외 타 계좌에 입금하신 경우 계약보증금 입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계약보증금은 지정된 계좌에 개인의 경우 신청인 본인, 법인 신청자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된 계좌 이외 타 계좌에 입금하거나 납부기한 이후 입금한 사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수의계약자는 상기 계약일에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무효입니다.
- 계약보증금을 과 납한 경우 즉시 반환되지 않으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불 처리됩니다.
- 계약자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계약보증금 환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또는 법인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환불계좌의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 오류 및 지연에 대해서는 당사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자격이 없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계약 해제하고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 관리형토지신탁계약 관련 특약사항

- “을”은분양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① 본 사업은 (시행)위탁자 (주)선우피엠앤드씨, 시공사 대우산업개발(주), 수탁자 대신자산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실질적 사업주체인 위탁자의 사업비 조달, 시공사의 책임준공, 수탁자의 신탁 사무처리를 통해 진행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이다.
  - ② 공급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수탁자 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본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및 수탁자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으로 본 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준공검사전 발생하자 포함)은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자 및 시공사가 부담하며, 분양계약자는 수탁자에게 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따른다.
  -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는 공급대상 목적물인 신탁재산을 보전하고, 준공 후 공급금액 완납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수탁자가 공급계약상 공급자로서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범위로 그 책임이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탁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 ⑤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 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수탁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의무(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된다.
  - ⑥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⑦ 본건 공급대상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분양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관련 법령상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⑧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시공사의 교체사유 발생시, 시공사의 교체 및 이에 수반되는 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⑨⑦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중도금 대출 제한 비율 강화 및 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잔중도금대출, 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⑩⑧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탁자가 하기로 하며, 미발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⑪⑨ 위탁자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분양계약자가 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⑫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시공업체를 교체하는 등 기타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 도과가 예상되는 경우, 위탁자는 2024. 4.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을”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입주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위 경우 위탁자는 변경 전 입주예정일 다음 날부터 실제 입주예정 가능일까지 제3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변경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될 경우 “을”은 제2조 제③항 1호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⑬⑩ “을”분양계약자는 본 재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 해지 등의 사유로 “갑”수탁자과와 “병”위탁자이 간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분양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평래 시점에 “갑”수탁자이가 분양계약 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병”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갑”수탁자의가 가지는 “을”분양계약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병”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되고, 이와 관련하여 “을”은 “갑”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⑭⑪ 본 조항은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인지한다.※ “을” 본인은 상기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을” 본인은 상기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자 성 명 (인)

- 유의사항
- 본 공급목적물은 2024년 3월 21일 「이안 퍼스티엄 이천부발」 공동주택과 함께 동별 사용승인을 득한 후 공급하는 상품입니다.
- 동별 사용승인에 따른 대지권에 대한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사업일정에 의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한 점포에 대한 영업허가, 등록, 인가, 용도 변경 등 상가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이며, 당사는 업종보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해당 허가(신고)관청에서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 인가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영업 업종은 법으로 허용된 용도 내 업종으로 개점하여야 하고, 상가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등)은 계약자 책임이며, 입점 시 및 입점 수 업종 중복에 대해서는 입점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당사는 업종보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지자체의 건축물 대장 등록업무지침에 따라 최초건축물대장 등록 시 상가의 세부용도(업종)가 지정될 수 있으며, 계약자(입점자)는 세부용도 지정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잔금 완납 후 열쇠수령 이전에는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가 불가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 전 필히 본 공급목적물에 대한 현황(창호, 내부 마감재, 구조 등 및 설계도면, 현장의 실단지 여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하자 등)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전면, 주변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및 주변환경(단지 외 가로수 식재 등) 등은 입점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이용을 위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현황 및 계획은 계약 전 매수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약일에 미 계약된 점포의 경우 별도의 공고 없이 필요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점포의 면적 분할, 합병 등의 방법으로 임의 분양하며, 이에 따라 용도 및 점포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미분양상가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여 재공급할 수 있으며, 기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본 상가의 영업 및 제반관리에 필요한 조직(상가 자치관리위원회)을 구성하여 상가에 대한 제반관리(공용부분 요금 포함 등)는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하여야 합니다. 상가 전체 전력 합산용량이 70kw이므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며 상가 전체의 전기, 소방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유지·보수·관리는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하여야 합니다.
- 분양 받은 상가 및 공용부분은 일체의 철거, 파손해서는 아니 되며,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당사에서 사용 검사 받은 상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용부분에 물품적치 및 임의 구획, 기 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 등 상가단지 형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됩니다.
- 상기 공급 대상은 설계상의 기본 시설로만 공급하는 상가입니다. 점포사용을 위한 제반시설(칸막이, 진열대, 상하수도, 전기, 급·배수, 냉·난방시설, 간판, 방화/방법셔터, 전기용량변경 등)과 상가의 전기용량 및 점포별 가스시설, 급·배수, 배수계량기 설치 및 사용자 명의변경, 한전 계량기(전기시설공사)로 인해 소요된 제반 경비 및 공용전기(복도, 화장실, 오수펌프 등)는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실별 환기시스템(주방배기 포함)은 설치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입점자가 개별적으로 설치 후 사용해야 하며, 환기시스템(주방배기 포함) 설치 시에는 인접한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에 소음 전달 및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상가시설의 소방 설비는 소화기가 2개소 제공됩니다. 소화기의 유지 및 관리는 추후 입점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입점하는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소방시설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입점자가 시행하여야 합니다. 방화/방법셔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별로 급수 1개소, 배수 1개소(위치변경 불가)가 마련되어 있으며, 급탕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바닥 배수구는 주방 등의 시설이 입점하는 경우 배수구 연결 시 그리스 트랩을 설치하여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하며, 미설치 및 입점자 과실로 인한 배수관 막힘 등의 하자처리비용은 입점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세탁소 등 고온증기 또는 고온수를 사용하는 업종 운영 시 직접 배수배관에 연결할 경우 배관 및 건축 마감재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처리비용은 입점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종합 입간판은 준공 전까지 관할 지자체와 사전협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 상가간판을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총 12대로 근린생활시설 전면 및 104동 전면으로 계획되며, 사업승인 도서 이외의 진입로 및 공동주택 주차장, 기타부대시설의 추가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우기 등의 기상요건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의 이용 상황에 따라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호실에 제연휀룸 등이 인접하여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상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해야 하고, 공동주택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배분된 주차장은 점포별 별도로 구획될 수 없으므로 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은 상가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 출입문의 위치는 각 호실 전면 1개소이며 107호는 전면 2개소입니다.
- 사용승인도서상의 시설물 또는 조경수목이 상가의 영업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하여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가와 인접한 동의 입주자들로부터 상가영업과 관련하여 사생활침해, 소음 및 냄새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영업과 관련한 민원은 계약자(입점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과태료 등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전에는 권리의무의 승계가 제한되므로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 완료되면 잔금납부 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당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이후 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일자(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자가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자진신고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납부일(미리 납부 시 납부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관리비 포함)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공부상 면적의 증감은 m<sup>2</sup>당 공급가에 의하여 정산처리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변동은 정산 생략)
- 건물면적은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며 공부상의 면적이 분양계약시의 면적과 차이가 있을 경우 증감부분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협의하여 최초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나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이 없으며, 대지의 공유 지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도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당사의 승인 하에 권리의무승계가 가능합니다. 단, 잔금납부가 완료되거나 대금 연체 시는 불가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 신청 전 현장 실사를 통해 기타 상가분양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본 상가는 실입점자를 위하여 분양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됨.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상 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수탁자신탁사)	대신자산신탁(주)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110111-7124665
위탁사위탁자	(주)선우피엠앤드씨	경기도 이천시 구만리로 229(안흥동)	110111-5831254
시공사	혜우이엔씨(주)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티타워동 1522호 (일직동, 유-플래닛 제유-플래닛)	134911-0117308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iaanic.com/>

▣ 분양문의 : ☎ 1811-8176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